

창원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0가단1045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우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균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8. 11. 체결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 D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2. 5. E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9. 2. 9.,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8. 4. 13. 피고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9. 4. 13.,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E는 2018. 7. 26. 사망하여 피고 B이 E를 단독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연대보증금 합계 1억
원(=5,000만 원+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날의 다음 날인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피고 B은 2018. 11. 무렵 피고 C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E의 사망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였고, 그중 1억 원을 2018. 11. 무렵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 당시에 피고 B이 채무초과로 무자력이었거나 위 증여로 채무초과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 C를 상대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증여로 채무초과로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피고 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은 경남 함안군 F 대 908㎡, 위 토지 G동호 지상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270.42㎡(찜질방), 2층 220.8㎡(찜질방) 건물, 위 토지 H동호 지상 벽돌구조 단층 아스팔트 싱글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15.40㎡ 건물, 위 토지 I동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57.95㎡ 건물, 경남 함안군 J 답 511㎡ 등 5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역시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1억 원 채무,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주)K에 대한 채무, L(주)에 대한 7,155,611원 채무, 함안군에 대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세금 채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채무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의 가액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2019. 1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그에 따라 부동산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경매법원의 지정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의 2019. 11. 13. 당시 가액을 860,257,400원으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의 2019. 11. 13. 당시 감정가액은 그로부터 1년 전인 이 사건 증여(2018. 11.) 당시에도 같은 가액임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860,257,4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실제로 위 경매 진행 결과 4차례 유찰되어 2020. 12. 당시에는 그 최저매각가격이 352,362,000원으로 낮아졌고, 결국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이 5억 원에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최저매각가격인 352,362,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 시기에 가까운 2019. 11. 13. 당시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860,257,400원으로 감정되었고, 위 감정 결과에 특별히 어떠한 흠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B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여부

그렇다면 피고 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의 가액 860,257,400원에서 원고에 대한

1억 원 채무,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주)K에 대한 채무, L(주)에 대한 7,155,611원 채무를 모두 공제하더라도 153,101,789원[=860,257,400원-(1억 원+6억 원+7,155,611원)]이 남는다. 함안군에 대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세금 채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채무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실제 금액이 얼마였는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적극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채무초과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증여로 피고 C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더라도 여전히 적극재산이 53,101,789원(=153,101,789원-1억 원) 남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피고 B이 채무초과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증여로 피고 B의 총 재산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편, 원고는 이 사건으로 피고 B에게 지급을 구하는 채권이자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서의 피보전채권인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채권’이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K에 이어서 차순위로 설정된 원고 명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2021. 10. 8.자 준비서면).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에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2. 5. 접수 제2148호 및 2018. 4. 13. 접수 제6255호로 각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다603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의 이 사건 증여 당시 가액은 860,257,400원이고,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에서 원고보다 선순위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주)K에 대한 채무가 유일하므로, 비록 경매 과정에서 원고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6) 소결론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5개 토지 및 건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증여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명